

지진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경상남도, 양산시 주관으로 2025년도 '지진안전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6일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 목 차 -

1. 사업개요	1
2.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5
3. 선정절차 및 세부기준	7
4. 연구개발기관 선정 방법	11
5. 추진 일정	12
6.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	12
7. 기타 사항	13
[참고 1]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14
[참고 2] 서면평가 항목	16
[참고 3] 발표평가 항목	17
[참고 4]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및 감점 세부기준	18
[참고 5] 신청서류 목록 및 부가 설명	19
[참고 6] 연구개발비 편성 시 유의사항	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사업 연계 R&D 사업임
- 경남도 내 지진안전산업의 첨단 제품·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이 기개발 보유한 우수 재난안전 기술을 대상으로 사업화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을 통해 지진안전제품 현장 보급 촉진

○ 지원내용

- 도내 지진안전산업 분야의 기술 및 제품을 활용한 자유공모형 사업으로, 지진 대응 관련 제품·기술을 중심으로 지역 수요 기반의 맞춤형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 지역 맞춤형 지진안전 기술 예시

- 공공시설물의 건축내외장재의 내진기술
- 지진이나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대변위에 대응가능한 배관연결재
- 지진 시 경남도 산업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기술
- 기타 경상남도 내 시설물의 지진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

※ 기술개발, 시험생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비, 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사업화 실증 및 시험인증, 기술/경영/투자유치 컨설팅 비용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경남지역 내 6개사 내외 (양산시 기업 3개사 이상)
- 기업당 2~4억원 내외 (평가를 통해 조정)
- 기업부담연구개발비 부담 필수, 기준 참조(참고 6)

* [참고 6. 연구개발비 편성시 유의사항] 외 기업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업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며, 기업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기업부담연구개발비의 납부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된다.

○ 지원대상

- 건설, 소방, 전력, 통신 등 분야에서 구조물 및 비구조물 등의 지진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진안전기술을 접목한 제조 산업 부품 및 모듈,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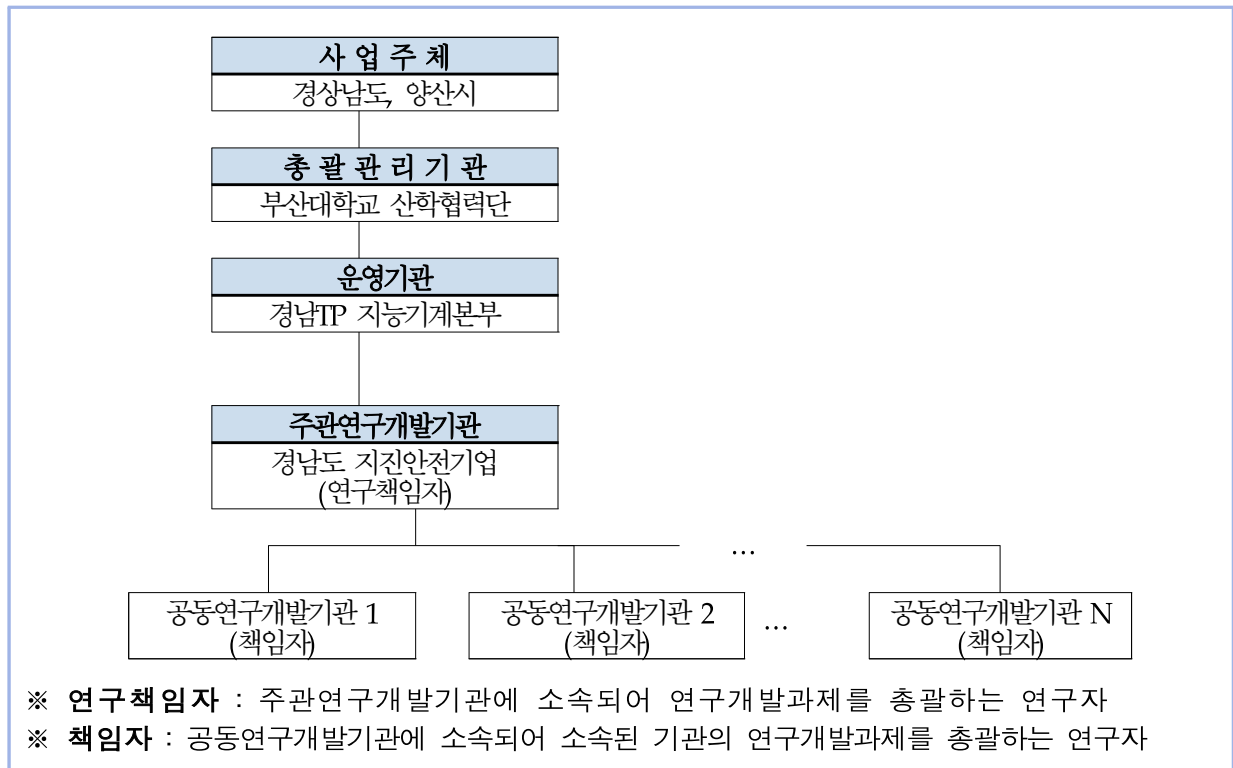
- ① 사업 시행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② 과제 총괄관리기관 : 지진방재연구센터
- ③ 과제 운영기관 : (재)경남테크노파크
- ④ 과제 수행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하단의 '지원 자격 및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구성할 것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과다 편성으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단체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사업추진체계 예시>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소속된 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지원사업 필수 성과 목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작성 시 최종 성과 인정기준인 ‘사업화(매출)*’ 및 ‘고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① (사업화) 기업지원연구개발비에 상응하는 성과 목표치에 해당하는 사업화(매출액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
 - ※ TRL 7단계 이상에 상응하는 ①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자) 평가, ②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③ 사업화(양산 및 매출액 등)를 과제 종료 전까지 완료
- ② (고용) : 기업지원연구개발비에 상응하는 고용 목표에 대한 증빙자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

구분	목표		
고용	사업기간 내 신규고용 달성: 지원금액 1억원 기준 0.46명		
	산출근거: 4.6명/10억		
매출	지원금액당	사업 기간 내	합 108% 이상 달성
	108% 이상 달성	사업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고용, 매출 실적은 경남지역 사업장에 한함

※ 목표 달성 불량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 기술료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로, 과제 종료 전후로 기술료 실적을 제출해야하며,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납부에 동의한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함
 -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성과를 실시할 경우, 기술료는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
- 기술실시계약의 결과로 기술소유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또는 직접실시의 경우 기술소유기관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관련 증빙자료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실적을 운영기관에 제출
- 기술료의 납부기간 및 납부액의 산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름

< 연구개발과제 공통 적용사항 >

- ▷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적용
- ▷ 공고 및 사전 검토 결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컨소시엄 포함)가 없는 경우 재공고
- ▷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지원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공공 또는 민간 수요기관 현장 실증 계획(관련 기관, 현장적용 방법 및 장소, 참여의향서 등) 관련 제시를 필수로 요구하며 최종 성과물의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매뉴얼 제작 필요
- ▷ 도전적 목표 수준·기술구현 방식·제품 형태 등은 신청자가 창의적으로 제안하되, 기존 유사 제품 및 시스템과 개발제품 간의 차별성을 근거로 사업화 계획 제시
- ▷ 개발 시제품이 기존 또는 유사한 형식승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술수준을 수립하되, 기존 형식승인 기준이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형식승인 기술 수준 제·개정안과 그 이유를 제시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연계를 위하여 진흥시설 연계 협업 약속서를 필히 제출해야함
-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연구개발기간 내 매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부스를 신청하여 참여하여야 함
- ▷ 자유공모형으로서 BM (Business Model) 및 현장 실증 계획을 반드시 제시
 - ※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공공 또는 민간 수요기관 현장 실증(관련 기관, 현장 적용 방법 및 장소, 의향서* 등) 관련 제시가 요구되며 최종 성과물의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매뉴얼 제작 필요

2.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2-1. 신청자격 및 조건

① 기업 신청자격

- 경상남도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공고일 마감 기준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경남지역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 지원 사업 필수 성과 목표인 고용, 매출 실적은 경남지역 사업장에 한함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남 소재 기업이 필수이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및 비영리 기관으로 구성 가능(타지역 가능)
 - ※ 우대 및 가점: 양산시 소재기업(공고일 마감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등의 기업요건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남소재 지진안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산·학·연으로 구성하고 타 지역 소재도 가능함

② 기술 조건

- 기술성숙도(TRL) : 5단계 이상 (과제종료시 TRL 7단계 이상)
 - ※ TRL 7단계 이상에 상응하는 ①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자) 평가, ②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③ 사업화(양산 및 매출액 등)를 과제 종료 전까지 완료

2-2. 신청제한

-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이하 '신청기관·단체')와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접수 신청 마감일까지 종료되는 신청기관·단체, 연구자는 신청 가능
- ② 연구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관·단체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 종사자

2-3. 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참여 범위 제한

- ① 신청기관·단체는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하나의 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② 신청기관·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하나의 컨소시엄만 구성 가능. 단, 같은 신청기관·단체라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 학과 또는 학부(학과가 없는 학부)가 다르거나 연구기관*인 경우 최하위 부서가 다르면 각각 컨소시엄 구성 가능
 -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③ 신청기관·단체(신청기관·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이하 신청기관·단체는 '컨소시엄'으로 본다)는 참여연구자 외 전문가(자문위원 등)를 구성할 경우 경쟁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포함 가능

2-4.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적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 제35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 그 밖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함

3. 선정절차 및 세부기준

3-1. 연구개발기관 선정절차



3-2. 사전 검토

- (접수 무효)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무효 처리
 - ①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에 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② 연구책임자가 [2-2.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이 [2-1. 신청자격 및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2.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 1.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신청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⑤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보완)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보완. 단, 신청기관·단체는 운영기관의 보완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접수 무효 처리
 - ①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② 중소기업 증빙서류 등 첨부 서류가 빠진 경우
 - ③ 책임자가 [2-2.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④ 공동연구개발기관이 [2-2.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 1.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첨부 2. 연구개발비 편성시 유의사항]의 기업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⑦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3-3.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확인

- 신청기관·단체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또는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중복성이 확인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① (1차) 신청기관·단체 확인
 - [붙임 4.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에서 과제의 중복성 여부 확인
 - ② (2차) 운영기관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과제 중복성 검토
 - ③ (3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확인
 - 평가위원 과반수가 신청된 연구개발과제를 중복으로 판정 시 연구개발기관 선정 대상에서 제외

3-4. 선정평가

- 서면평가(해당시)
 - 연구개발과제별 경쟁률이 7배수 초과 시 서면평가를 할 수 있으며, 최대 7배수까지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상대평가)
 - 서면평가위원은 연구개발과제의 전문분야에 따라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서면평가의 평가항목은 [참고 2. 서면평가 항목]과 같으며, 필수 평가항목(연구개발의 부합성)에서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부적합'으로 평가한 경우 지원(발표평가) 제외
- ※ 서면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점수에 미반영

○ 발표평가

-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전문가 5인 내외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 발표평가는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발표평가의 평가항목은 [참고 3. 발표평가 항목]과 같음
 - ※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의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책임자의 발표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으로 처리함

3-5. 가점 및 감점 기준

- 연구개발기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신청기관·단체(선정평가 결과 탈락한 신청기관·단체는 제외)의 발표평가 점수에 [참고 4.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및 감점 세부기준]에 따른 가점 및 감점 부여
- 신청기관·단체는 [참고 4.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및 감점 세부기준]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5. 가·감점 신청서]와 증빙서류(기술료 증빙은 통장사본)를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함

4. 연구개발기관 선정 방법

- (우선순위 선정)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 및 감점 부여 점수를 합산한 점수(이하 '최종점수') 산정 후 신청기관·단체별 최종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연구개발기관 우선순위 결정 후 과제별 1순위 신청기관·단체를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 기준) 1순위 최종점수가 같은 경우 다음의 적용순서대로 우선순위 결정

- (적용1) 발표평가 점수의 평가위원별 점수를 재산정하고, 재산정된 점수에 가점 및 감점 부여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신청기관·단체
- (적용2) 적용1의 점수 중 가점 및 감점 부여 없이 재산정된 점수가 높은 신청기관·단체
- (적용3) 적용1에 따라 재산정된 점수 중 발표평가 항목의 '사업화·성과 계획의 적정성'의 점수가 높은 신청기관·단체
- (적용4) 적용1에 따라 재산정된 점수 중 발표평가 항목의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의 점수가 높은 신청기관·단체
- (적용5) 적용1에 따라 재산정된 점수 중 발표평가 항목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역량'의 점수가 높은 신청기관·단체

- (차순위 기관 선정) 1순위 신청기관·단체(연구책임자 포함)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이전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차순위 신청기관·단체를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
- 운영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요청에도 연구개발기관이 기한 내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차순위 신청기관·단체를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

5. 추진 일정

- 신규과제 공고 : 2025. 5. 16.(금) ~ 5.29.(목)
 - 선정평가 : 2025. 6월
 - 협약체결 및 연구 착수 : 2025. 6월
- ※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

- 신청기간 : 2025년 5월 16일(금) 13:00 ~ 5월 29일(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 경남테크노파크(<https://www.gntp.or.kr>) 접속 후
지원사업 > 지원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참고 5. 신청서류 목록 및 부가설명] 참고
-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 접수 마감일 18시 기준으로 온라인상 '제출' 상태인 과제만 접수 완료된 것으로 인정
 - ※ 직인이 필요한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함
- 문의처
 - (신청서 관련)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본부
(☎ 055-259-4704)
 - (기술 관련)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
(☎ 051-510-8194)

7. 기타 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예정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 자료를 조작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조치
 - 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취소, 기업지원연구개발비 환수,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등 조치
- 신청기관·단체는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예시

- 선정평가 결과 중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의견에서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연구개발비 결정, 선정평가에 따른 규정, 절차, 방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연구개발과제 연구성과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신청기관·단체는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 지표를 50%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의 성과지표 항목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과 함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참조 하며, 관련 법령·규정은 사업 시행주체의 해석을 따름
 -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 (관련 규정)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등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참조

참고 1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함
 - 단, 발표평가일 전 영업일 18시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아래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결산 재무제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참고 2

서면평가 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여부 확인	
			적합	부적합
연구개발 계획 필수사항 검토	1. 연구개발의 부합성	①사업 목적 및 연구개발과제 신청 자격의 부합성	()	()
	2. 유사·중복성	①기생산 제품·기기와의 유사·중복성	()	()
		②기개발 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	()
※ 필수사항 검토는 각 평가지표별 부합여부를 평가하여 1개 평가지표라도 부적합시 지원제외하며, 모두 적합시에 한하여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 점				
연구개발 계획 세부검토	3. 기술성 항목	①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보유 기술수준(연구실적 등)	20	16	12	8	4
		②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의 적정성	30	24	18	12	6
		③관련 기술 및 시장동향의 정보조사 충실성	5	4	3	2	1
	4. 사업성 항목	①목표시장의 규모(성장성) 및 진입가능성	15	12	9	6	3
		②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20	16	12	8	4
		③고용친화도(과제 수행 중 연구인력 고용계획 등)	10	8	6	4	2
합 계			점				

참고 3

발표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배점				
가. 사업수행 적합성(35)	① 분야 적합성 및 지원의 필요성 - 사업화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10	8	6	4	2
	② 사업화 노력 및 의지 -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를 위한 노력 (신청하는 과제 관련 투자 내역 (기술/기간/금액 등), 실적(시제품, 특허, 논문 등 실적) 등)	10	8	6	4	2
	③ 사업화·성과 계획의 적정성 - 사업화 추진전략, 방법 등의 적정성 - 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정성 및 도전성	15	12	9	6	3
나. 사업성 및 기술성(40)	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기존 기술(제품) 대비 비교우위(수익성) 등)	20	16	12	8	4
	②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 기술의 우수성 및 독창성, 활용가능성	10	8	6	4	2
	③ 사업화 대상기술의 활용성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지진안전 분야의 기술적·정책적 예상문제 해결 및 성과의 파급효과	10	8	6	4	2
다. 사업주체 역량(25)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의지 등	10	8	6	4	2
	② 연구조직의 연구·생산 인프라 보유수준 등 - 기술(제품)의 연구·생산능력 및 마케팅 능력 등	10	8	6	4	2
	③ 고용창출 효과 ※ 연구개발계획서 '신규채용 인원' 참고	5	4	3	2	1
평가점수		점				

참고 4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점 및 감점 세부기준

구분	기 준		적 용 기산일	적용 기간	가점 감점
1. 가점 부여 항목	가. 양산시 소재기업(공고일 마감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등의 기업요건에 따라 차등하여 가 점 부여)	본사	공고일 마감 기준	-	3점
		공장			2점
		연구소, 지사			1점
2. 감점 부여 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포함)나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처분 시작일	3년	3점 이내
	나.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 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포함)나 연구 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기에 따른 협약 해약일	3년	2점 이내
가· 감점 부여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및 감점은 최대 5점 이내로 부여 ▶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후 가점과 감점의 상한은 각각 최대 5점 이내로 함. 				
비고	▶ 적용 기간은 신청 마감일 기준임				

참고 5 신청서류 목록 및 부가설명

○ 신청서류 목록

번호	서류명	대상기관 및 비고
1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1-1	[별첨 1]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해당)	해당 연구개발기관
1-2	[별첨 2]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해당)	해당 연구개발기관
1-3	[별첨 3] 기술준비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목표(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1-4	[별첨 4]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해당)	해당 연구개발기관
1-5	[별첨 5]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영리기관 필수)	해당연구개발기관 (영리기관 필수)
1-6	[별첨 6] 영리기관의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영리기관 필수)	해당연구개발기관 (영리기관 필수)
1-7	[별첨 7]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평가, 진도점검 후 제출)	모든 연구개발기관
1-8	[별첨 8] 진흥시설 연계 협업 협약서(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붙임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3	[붙임 3]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4	[붙임 4]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5	[붙임 5] 가·감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해당)	해당 연구개발기관
6	[붙임 6]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7	[붙임 7] 온라인 제출 최종확인서(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8	전 기관 사업자등록증(필수)	해당 모든 연구개발기관
9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10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11	최근 3개년 재무제표(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12	고용현황 관련 증빙자료(필수) (`25. 4.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부)	모든 연구개발기관
13	기타서류(해당) ※ 기타서류제출시 서류명 작성 후 제출 - 제출서류명	해당 연구개발기관
14	발표자료	접수 후 별도 안내

○ 신청서류 부가설명

① [붙임1]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1부 **필수 해당**

※ 관련 서식: [붙임1]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 ①-1 [별첨 1]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해당)
- ①-2 [별첨 2]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해당)
- ①-3 [별첨 3] 기술준비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목표(필수)
- ①-4 [별첨 4]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해당)
- ①-5 [별첨 5]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영리기관 필수)
- ①-6 [별첨 6] 영리기관의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영리기관 필수)
- ①-7 [별첨 7]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평가, 진도점검 후 제출)
- ①-8 [별첨 8] 진흥시설 연계 협업 협약서(필수)

② [붙임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필수**

③ [붙임3]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필수**

④ [붙임4]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필수**

⑤ [붙임5] 가·감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해당**

※ 서류접수 시 제출하지 않은 실적(가·감정)은 인정되지 않음

※ 별도양식은 없으나 기술료 증빙시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⑥ [붙임6]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⑦ [붙임7] 온라인 제출 최종확인서(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필수**

⑧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 전 기관 제출 필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⑨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1부 **해당**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기업인 경우 제출 필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전수이행상황신고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1개 또는 중견기업 증빙 서류 제출

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해당**

※ 영리기업은 제출 필수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신생기업일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세무사, 회계사의 날인 필요) 1부 제출

※ 전담기관 평가시스템(stella)과의 자동연계를 위해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기업 재무정보 등록 필수(<http://www.findsystem.co.kr/fs/FSDSI05R1.pop?instCd=78>)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및 외감법인은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⑪ 최근 3개년 재무제표 **필수**

⑫ 고용현황 관련 증빙자료 **필수**

※ '25. 4.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부

참고 6 연구개발비 편성 시 유의사항

1. 기업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업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적용

① 기업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 기업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② 기업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 기업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은 다음 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기업부담연구개발비는 사업 협약 체결 후 지정된 사업비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며, 기업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기업부담연구개발비의 납부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업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기업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기업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업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 ③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업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기업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 연구시설·장비비
 - ㉢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 소프트웨어 활용비
- ④ ②와 ③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 ⑤ 제2호에서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2.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 기준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 참고

- 영리기관의 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를 국가(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SW 또는 설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한 경우

참조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대분류(5)	중분류(16)	소분류(71)		
1 자연 재난 예방 산업	11. 풍수해 관련 자연 재난 예방산업	111. 풍수해 예방 제품 제조업	112. 풍수해 예방 제품 판매업	
		113. 풍수해 예방 제품 수리업	114. 풍수해 예방 시설 공사업	
		115. 풍수해 예방 시설 설계·감리 및 안전진단업		
	12 지진 및 화산활동 관련 자연재난 예방산업	121. 지진 및 화산 피해 예방 기기 제조업	122. 지진 및 화산 피해 예방 기기 판매업	
		123. 지진 및 화산 피해 예방 기기 수리업		
		124. 지진 및 화산 피해 예방 시설 보강 공사업		
		125. 지진 및 화산 피해 예방 시설 설계·감리 및 안전진단업		
		13 기타 자연재난(황사 대설 폭염 등) 예방산업	131. 황사 예방 장비 제조업	132. 황사 예방 장비 판매업
	133. 대설 피해 예방 제품 제조업		134. 대설 피해 예방 제품 판매업	
	135. 대설 피해 예방 서비스업		136. 그 외 자연재난 예방 장비 제조업	
137. 그 외 자연재난 예방 장비 판매업				
138. 기타 자연재난 예방 장비 수리업(황사 및 대설 예방 장비 포함)				
		139. 기타 자연재난 예방 관련 서비스업(대설 피해 예방 서비스업 제외)		
2 사회 재난 예방 산업	21. 화재 및 폭발·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	211. 화재 및 폭발 관련 예방 제품 제조업	212. 화재 및 폭발 관련 예방 제품 판매업	
		213. 화재 및 폭발 관련 예방 제품 수리업	214. 소방 안전시설 공사업	
		215. 소방 안전시설 설계·감리 및 안전진단업		
	22 교통사고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	221. 교통사고 예방 제품 제조업	222. 교통사고 예방 제품 판매업	
		223. 교통사고 예방 제품 수리업	224. 교통사고 예방 시설 공사업	
		225. 교통사고 예방 시설 설계·감리 및 안전진단업		
	23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	231.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피복 제조업		
		232.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피복 판매업		
		233.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기타 제품 제조업(피복 제외)		
		234. 감염병, 화생방,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기타 제품 판매업(피복 제외)		
24 기타 안전사고 예방산업(산업재해 범죄 보안 등)	241.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피복 제조업			
	242.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피복 판매업			
	243.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기타 제품 제조업(피복 제외)			
	244.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기타 제품 판매업(피복 제외)			
	245.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 제품 수리업			
	246.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 시설 공사업			
	247. 산업재해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 시설 관련 설계·감리 및 안전진단업			
3 재난 대응 산업	31. 재난 상황관리 관련 산업	311.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방송 장비 제조업	312.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방송 장비 판매업	
		313.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방송 장비 수리업		
		314.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기계설비 및 관리시설 공사업		
		315.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기계설비 및 관리시설 설계·감리 및 안전진단업		
		316. 재난 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 관련 제품 제조업(운송 및 물품취급 장비 제외)		
	32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	321.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 관련 제품 판매업(운송 및 물품취급 장비 제외)		
		322.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 관련 제품 수리업(운송 및 물품취급 장비 제외)		
		323. 구급용 자동차 제조업	324. 구급용 기타 운송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325. 구급용 자동차, 기타 운송 및 물품 취급장비 판매업		
		326. 구급용 자동차, 기타 운송 및 물품 취급장비 수리업		
33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산업	327. 구급용 자동차, 기타 운송 및 물품 취급장비 서비스업			
	328. 구급용 운송 관련 서비스업			
	329.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제품 제조업			
4 재난 복구 산업	330.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제품 판매업			
	331. 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서비스업			
	41. 시설 피해 복구 산업	411. 시설피해 복구 공사업	412. 비상전력 생산용 기기 및 장치 제조업	
413. 비상전력 생산용 기기 및 장치 수리업				
42 재난현장 환경 정비 산업	421. 재난현장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422. 재난현장 청소업			
5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 업	51. 재난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	511. 재난안전관리 프로그래밍 및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512.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업	513. 재해감시시스템 서비스업	
	52 재난관련 안전시설 관리 위험물품 보관 및 경비·경호업	521. 안전시설 관리 서비스업		
		522. 위험물품 보관 서비스업		
	53 재해보험 서비스업	523.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재해감시시스템 제외)		
54 재난 관련 교육·상담·컨설팅업	530. 재해보험 서비스업			
	541. 재난 관련 교육업	542. 재난 관련 심리상담 서비스업		
		543. 재난관리 컨설팅 서비스업(환경관련 컨설팅 제외)		